

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2545호

2026년 8월 28일 (금)

차 례

고시 · 공고

- 파주시 고시 제2026-349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1
- 파주시 고시 제2026-353호 불법성토농지 사고지 해제 고시 2
- 파주시 공고 제2026-2327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3
- 파주시 공고 제2026-2339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보 공시송달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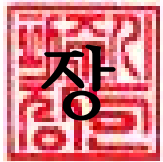
회 람									
--------	--	--	--	--	--	--	--	--	--

발 행 : 파 주 시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3,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성토)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파 주 시 장 

1. 고시취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등)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산읍 장산리 46-1번지에 대하여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4에 따라 “사고지(불법성토)로 등재함.

2. 사고지 조서(지역·지구 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구분	명칭	위치	지목	면적(m ²)	비고
1	사고지 (불법성토)	문산읍 장산리 46-1	답	4,988	농지불법성토

3.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4.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원상복구 완료시

5.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

불법성토농지 사고지 해제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3, 같은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농지성토된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해제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파 주 시 장 

1. 고시취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지로 등재된 월릉면 능산리 613, 614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3,4에 따라 사고지 해제함

2. 사고지 조서(지역·지구 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구분	명칭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사고지 내용 삭제	월릉면 능산리	613	답	562	원상회복 완료
2			614		1,472	

3.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4.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원상복구 완료시
5.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 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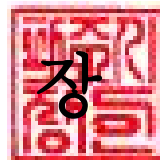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금) ~ 9. 30.(수) (33일간)
3. 공고장소: 시보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 가.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 등)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 031-940-5063)

2026년 8월 28일

파 주 시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	-----------

연번	행위자	하천명	불법점용위치	위반내용
1	미상	문산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0-2번지 일원	경작
2	미상	사포교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140-2번지 일원	경작
3	미상	청룡두천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763-3번지 일원	경작
4	미상	공릉천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35-6번지 일원	경작
5	미상	공릉천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29-10번지 일원	경작
6	미상	공릉천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625-2번지 일원	경작

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0-2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2.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140-2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기타 적치물)



3.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763-3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4.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35-6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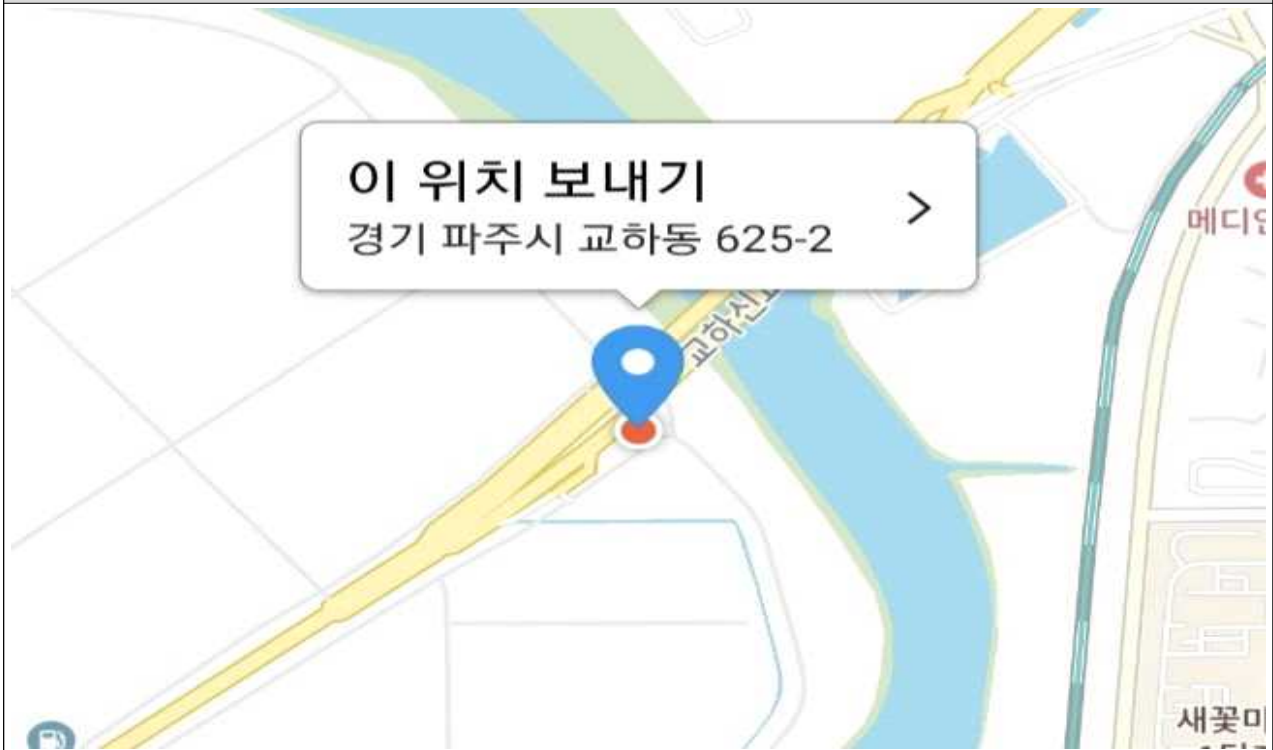


5.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29-10



6.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625-2(94-3)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제2026-0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성명: 미상

주소: 미상

파주시 공고 제2026-1599호, -168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경작 및 적치물을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하천 관리, 도시미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0-2번지 일원	경작	1개소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강제철거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140-2번지 일원	경작	1개소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763-3번지 일원	경작	1개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35-6번지 일원	경작	1개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29-10번지 일원	경작	1개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625-2(94-3)번지 일원	경작	1개소	

2026년 8월 28일

파 주 시 장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보 공시송달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금) ~ 9. 14.(월) (17일간)
3. 공고장소: 시보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3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6. 9. 14.(월)까지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2층 하천관리과 (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
8.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 ☎ 031-940-5064

2026년 8월 28일

파 주 시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	------------------

연번	행위자	하천명	불법점용위치	위반내용
1	미상	사포교천	검산동 489-12	불법적치물
2	미상	설문천	상지석동 1547-1	불법경작

1. 파주시 김산동 489-12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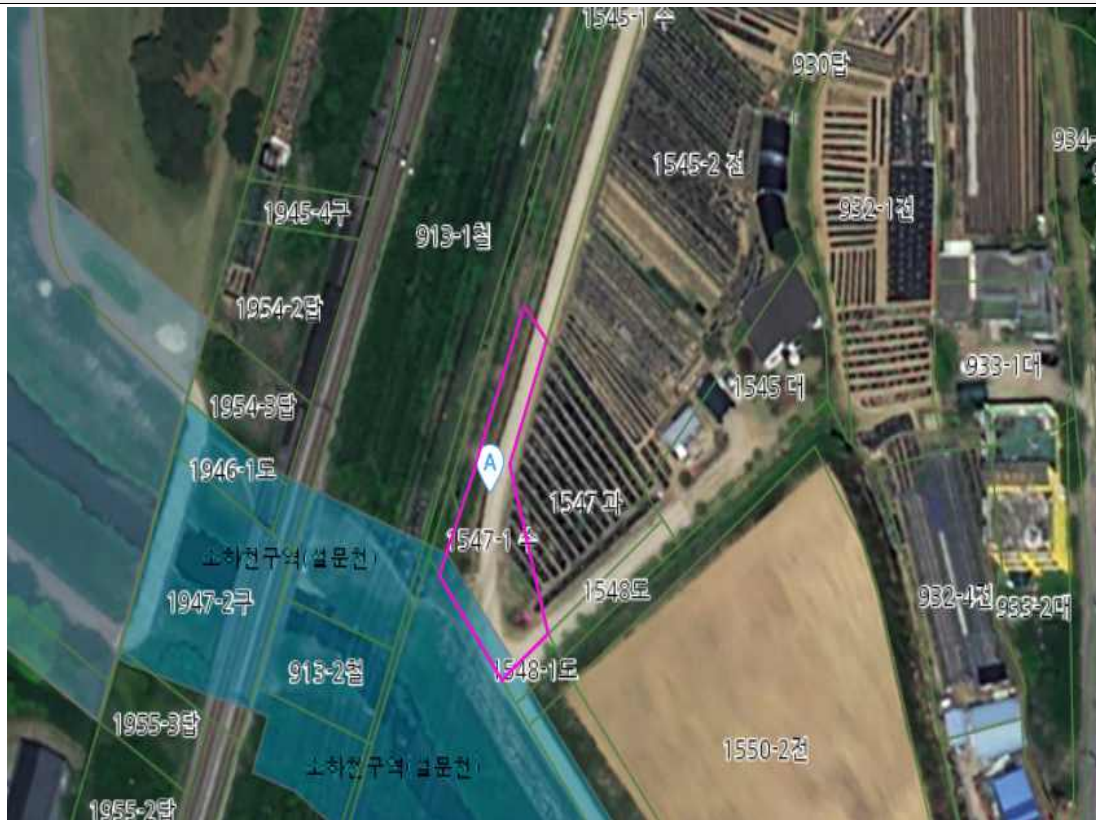


현장사진



2. 파주시 상지석동 1547-1

위치도



현장사진

